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호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br>번호 | 447 |
|----------|-----|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7일  
발 의 자 : 송도호 의원(1명)  
찬 성 자 : 김태호, 김정태, 홍성룡, 이세열,  
김동식, 이승미, 송아량, 노식래,  
김상훈 의원 (9명)

## 1.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 및 한파 발생은 재난 수준의 재앙으로 인식되면서 폭염과 한파로부터 저소득층 가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에너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음  
따라서 현행 조례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 진단 등의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로부터 에너지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연료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복지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
- 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빈곤층 등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6조의3 신설)
- 다. 시장은 에너지빈곤층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6조의4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빈곤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제26조제1항 중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강화 등의”로 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빈곤층 등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에너지진단 등) 시장은 에너지빈곤층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정의) ① 1. ~ 7. (생략)<br/> <u>&lt;신 설&gt;</u></p> <p>② (생략)</p> <p>제26조(시민 등과 협력강화) ①<br/>           -----<br/>           -----<br/>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br/>           -----<br/>           -----.</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 <p>제3조(정의) ① 1. ~ 7. (현행과 같음)<br/> <u>8.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빈곤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6조(시민 등과 협력강화) ①<br/>           -----<br/>           -----<br/>           온실가스 배출 저감, <u>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강화</u> 등의 -----<br/>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26조의3(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빈곤층 등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u></p>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  
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4(에너지진단 등) 시장은  
에너지빈곤층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  
을 실시할 수 있다.